

1. 개정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선박검사관 자격 요건 개선, 선박검사 준비사항의 완화 등 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협약개정안 반영(안 제64조, 제65조 및 별지 제66호 서식)

국제협약* 개정 사항의 국내법령 반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안전점검방법의 작성기준을 포함하고 컨테이너 점검방법의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를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함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I 제2규칙 제4항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지침(CSC.1/Circ.143)」

나. 정부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개선(안 제97호)

선박검사관 자격기준의 완화를 위해 학력기준과 면허기준을 “순차적으로 충족”하도록 하던 것을 “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면허 소지자”로 개선함

다. 선박검사 준비사항의 완화(별표11, 별표15)

경질유 사용 선박에 대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위한 연료유탱크, 여과기 등의 개방 면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외기 설치 선박은 입거검사 생략 등 검사준비사항을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가목2)”를 “제2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3일 전까지”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안전점검기준”을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점검방법 작성기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I 제2규칙제4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87조의2 중 “검정증서, 제54조제7항”을 “검정증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7항”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졸업한 후 또는”을 “졸업하였거나”로, “갓춘 후 3급항해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을 “갓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졸업한 후 또는”을 “졸업하였거나”로, “후 2급항해사”를 “자로서 2급항해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졸업한 후 또는”을 “졸업하였거나”로, “후 다음”을 “자로서 다음”으로, “해당하게

된”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졸업한 후 또는”을 “졸업하였거나”로, “갓춘 후 2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을 “갓춘”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졸업한 후 또는”을 “졸업하였거나”로, “갓춘 후 3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을 “갓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졸업한 후 또는”을 “졸업하였거나”로, “후 2급기관사”를 “자로서 2급기관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을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로, “후 다음”을 “자로서 다음”으로, “해당하게 된”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졸업한 후 또는”을 “졸업하였거나”로, “갓춘 후 2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을 “갓춘”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5)나)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질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개방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5 제3호라목1) 표 중 “Lf”와 “LBP”를 각각 “L”로 하고, 같은 목 2) 중 “LBP”를 “L”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외기 설치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정기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6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I 제2규칙제4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검사의 준비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및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 5. (생략)	제6조(적용선박) ----- ----- 제2 조제1항제3호가목----- ----- ----- -----.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① ----- ----- ----- ----- ----- -----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3일 전까지 ----- -----.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방법 또는 계속점검방법을 위한 법 제24조제3항의 안전점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점검방법 작성기준-----

한다.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컨테이너의 종류별·규격별 보유현황

나. 정기(계속)점검계획(조직 및 실시요령을 포함한다)

다. 정기(계속)점검기준(점검항목 및 판정기준을 포함한다)

라. 정기(계속)점검기록, 정기(계속)점검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구조·강도 등에 관한 서류의 관리방법

3. (생략)

② (생략)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I 제2규칙 제4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선
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으로 구
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관

가. 대학의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
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을 갖춘 후 3급항해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서 3급 항해사의 해기사면
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
력(승선경력을 산정할 때
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나.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
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
급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
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의 해기사면허
를 취득한 자

-----.

1. -----

가. -----
졸업하였거나 -----

- 갖춘 -----

나. -----
----- 졸업하였거나 -

----- 자로
서 2급항해사-----

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1) ~ (3) (생략)

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향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급향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관검사관

가. 대학의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 졸업
하였거나 -----

--- 자로서 다음-----

- 해당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라. ----- 졸업하였거나 -

----- 갖춘 -----

2. -----

가. -----
졸업하였거나 -----

- 갖춘 -----

나.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
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
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
허를 취득한 자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
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자

(1)·(2) (생략)

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
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
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
허를 취득한 자로서 2급기
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 ⑥ (생략)

나. -----
----- 졸업하였거나 -

----- 자로
서 2급기관사 -----

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
업하였거나 -----

--- 자로서 다음-----
- 해당하는 ----

(1)·(2) (현행과 같음)

라. ----- 졸업하였거나 -

----- 갖춘 -----

② ~ ⑥ (현행과 같음)